

인터넷 프로토콜(IP)과 통방융합



정보통신부 융합전략팀장 박노익

1. 서론

최근 IT의 급속한 발전과 방송의 디지털화로 인해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융합현상이 다방면에 걸쳐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TV, DMB, Webcasting, 데이터방송 등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현상은 통신·방송 전반으로 확대되어 통신·방송의 산업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방융합의 진전은 지난 1990년대의 IT분야와 같이 세계적인 호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바이오, 나노 분야 같은 새로운 영역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분야까지 융합을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통신방송 융합의 개념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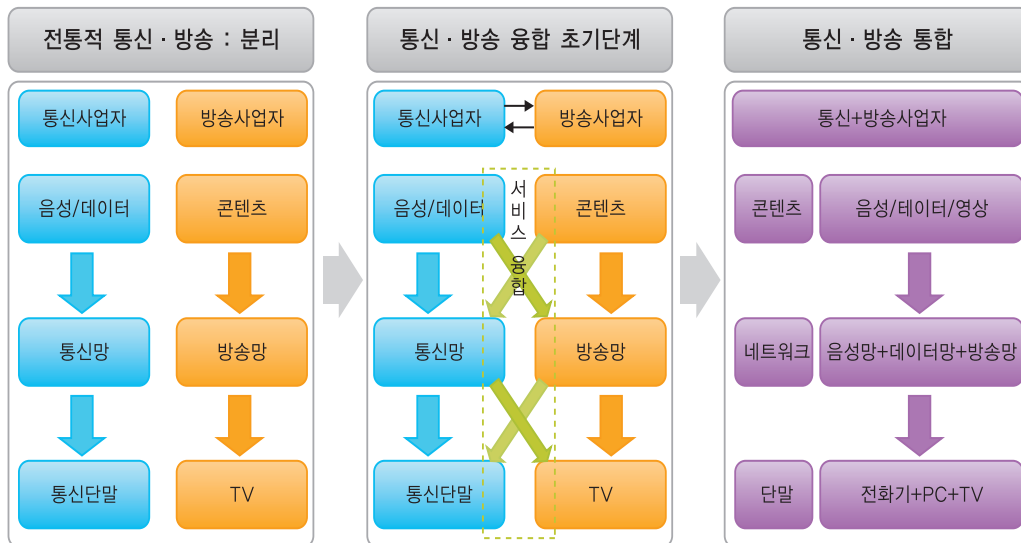
OECD는 통신방송의 융합(Convergence)을 ‘통신망의 광대역화, 방송의 디지털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플랫폼이 비슷한 영역의 음성, 영상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단말기(TV, PC, 전화기)들을 통해 비슷한 서비스를 받게 되며 신규 서비스가 창출되는 변화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통신은 개인 상호간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방송은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송신하는 서비스로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통신과 방송 서비스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에 따라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수직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통신망에서 방송프로그램이 전송되는가 하면 방송망에서도 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으며, 통신과 방송서비스를 모두 하나의 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통방융합은 모든 형태의 콘텐츠가 모든 형태의 네트워크나 단말기를 통해 전송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될 전망이다.



[그림 1] 통신·방송 융합의 전개방향

3. 통신방송 융합의 주요 이슈

1) IPTV의 도입

IPTV는 통신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영상콘텐츠(VoD), 인터넷 접속,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IPTV를 규제하는 데는 통신법과 방송법 모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먼저 통신법으로 IPTV를 규제하는 경우, 내용·광고·편성규제 등 콘텐츠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콘텐츠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경우 이미 통신 분야의 네트워크와 진입·소유제한을 받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방송권역의 제한, 사업자의 소유제한 등 방송의 규제를 이중으로 받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나 이중규제와 과도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존법의 적용보다는 제3의 (가칭)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은 EU, OECD 등 주요 국가들이 채택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기본 틀을 적용하되 IPTV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즉 콘텐츠에 대해서는 방송법 상의 규정을 최대한 준용하고 진입이나 통신망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수용자는 것이다.

	통신	IPTV	방송
정보내용	사적(私的)	사적, 공개적	공개적
정보흐름	양방향성	양방향성	단방향성
이용자 범위	특정인	가입자	공중
이용자 선택성	강함	강함	약함
이용자의 행위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수동적
프로그램 편성	없음	없음	있음

[그림 2] IPTV와 통신, 방송과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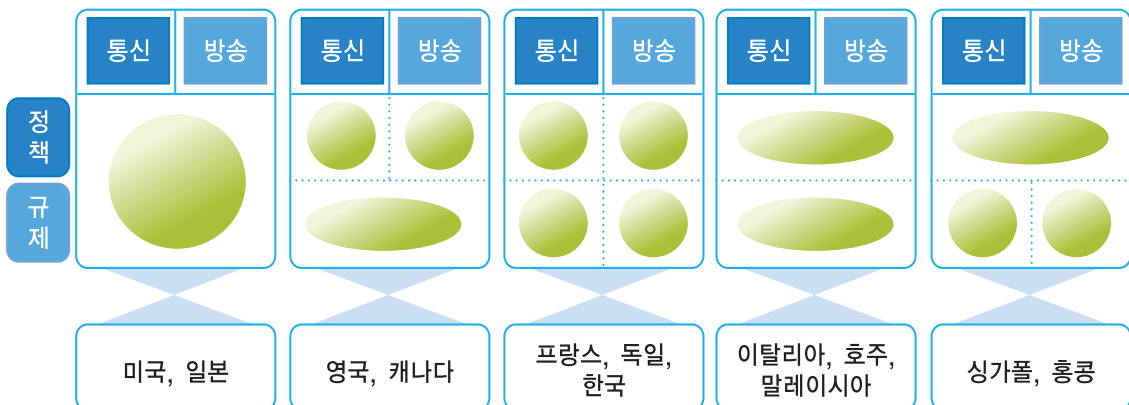
또한,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서비스는 최소 기준만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케이블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현행 수준보다 완화하여 사업자간 규제의 형평성 문제 해소도 병행해야 한다.

2) 통신과 방송의 규제기구 개편

융합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들고 집행할 정책과 규제기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통방융합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이다. 통신과 방송의 관련 기능은 크게 정책과 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정책은 일반정책과 지원으로, 규제는 기술·경제규제와 내용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 각국은 자국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통신과 방송의 정책과 규제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세계 각국의 통신·방송 정책기구 현황

정책과 규제가 분리된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규제기관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FCC, 위원회), 일본(총무성; 정부부처)은 통신·방송의 정책·규제기능을 단일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이탈리아·호주·말레이시아·싱가폴 등은 통신·방송의 정책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 대부분 통신·방송 정책수립과 법령 제·개정 등 정책기능은 정부부처가 담당하고 불공정 경쟁·내용규제 등 규제기능은 위원회가 각각 수행하고 있다.

바람직한 통신과 방송의 정책규제기관의 모습에 대해서는 독입제 행정기관, 위원회 등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구개편의 형태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IT산업의 가치사슬(IT제조/네트워크/서비스/콘텐츠)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형태로 정부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 하겠다.

4. 맺음말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융합환경에 맞는 정책 틀 마련을 위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방송법과 통신법을 준용한 제3의 입법을 통해 IPTV를 조속히 도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현행 통신과 방송의 규제체계를 통신과 방송의 구분 없이 전송(carriage)과 콘텐츠(content)로 이원화하여 전송부문에 대해서는 경쟁 확대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는 한편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신과 방송으로 나누어진 정책 추진체계와 규제기관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 융합시대의 새로운 통합기구는 통방융합이 일어나는 콘텐츠,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전 영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통신방송 융합시대에도 다양성, 다원성 등 방송이 지켜야 할 공익성은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융합시대에 걸맞게 공익성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동안 산적해 있는 통방융합의 정책적 이슈들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통신계와 방송계가 상생협력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행히도 범정부차원에서 통방융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정책적 이슈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TA**

